제261회 강서구의회 정례회
보건·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2018. 11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보건·복지위원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18년 11월 28일
전문위원 김 동 영

1. 회부경위

가. 의안번호 : 2018 - 62

나. 제 출 자 : 강서구청장

다. 제출일자 : 2018년 11월 6일

라. 회부일자 : 2018년 11월 8일

2. 제안이유

최근 가족 및 지역사회에서 고립되어 홀로 외롭게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어,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기반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용어의 정의(안 제2조)

나. 적용범위(안 제3조)

다. 추진계획의 수립 및 실태조사(안 제5조 ~ 제6조)

라. 지원 및 지원대상(안 제7조 ~ 제8조)

마. 고독사 예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(안 제9조)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「지방자치법」 제9조 및 제22조,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7조의 2

나. 예산조치 : 필요시 예산조치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

1) 입법예고 결과 : 의견 없음(2018. 9. 21. ~ 10. 11.)

2)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 : 별첨

3) 부패영향평가 결과 : 원안 동의

4) 사전 규제심사 결과 : 해당없음

5)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: 개선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제정 취지

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출된 제정안임.

나. 주요 제정내용

○ 본 조례안은 총 10개 조문으로 구성되며,

○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를,

○ 안 제3조에서 조례의 적용범위를 정함.

○ 안 제4조에서 구청장의 고독사 위험 예방에 필요한 정책 수립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○ 안 제5조에서 사회적 고립가구 실태조사 및 지원,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서비스 지원, 고독사 예방 교육 및 연구 지원 등이 포함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,

○ 안 제6조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○ 안 제7조에서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, 정기적인 안부확인 및 긴급의료, 방문간호서비스, 일자리 알선 등 구청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업 및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

○ 안 제8조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등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,

○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및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함.

다. 종합의견

○ 1인 가구의 증가원인에는 인구 노령화,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 독신 증가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며, 사회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[1]되는 바, 이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.

○ 이 중 고독사는 1인 가구에서 발생하는 문제점 중 한 가지로 과거 홀로 사는 노인계층에서 주로 발생하였으나, 최근 자료에 따르면 모든 계층에서 나타나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임.

---

1)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, 우리나라 일반가구 중 1인가구 비율은 2025년 31.9%, 2035년 34.6%, 2045년 36.3%로 전망됨.

<서울시 고독사 사례 현황>

(단위 : 명)

구분	소계	10대	20대	30대	40대	50대	60대	70대	80대	90대 이상	불상
소계	2,340	11	102	226	340	524	368	385	234	62	88
고독사 확실 사례	162	0	5	16	34	58	32	12	2	1	2
고독사 의심 사례	2,178	11	97	210	306	466	336	373	232	61	86

※ 2013년 1월~12월까지 서울지방경찰청 소속 경찰서의 변사사건 및 서울시 무연고사망자 처리보고서를 분석하여 작성한 자료로, 서울시 복지재단의 '2016년 서울시 고독사 실태파악 및 지원방안 연구'에서 발췌함.

※ 해당 자료에 따르면, 강서구의 경우 확실 사례 13건, 의심 사례 104건임.

○ 본 조례안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회적 고립가구에 대하여 정기적인 안부 확인, 심리상담 및 치료, 일자리 알선, 사회적 관계형성 등을 지원하여, 자칫 소외될 수 있는 복지 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

○ 다만, 향후 조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질적인 사업 발굴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, 조례안 제7조의 지원에 필요한 예산 확보 방안 마련에도 힘써야 할 것임.

○ 또한, 본 제정조례안의 입법내용은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되므로 「지방자치법」제9조 및 제22조에 따라 조례 제정이 가능하며,「긴급복지지원법」등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이 없이 적법하게 제출된 조례안으로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.

붙임 관계법령 1부.

붙임 관계 법령

❑ 지방자치법

제9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2.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

가.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

다. 생활이 곤궁(困窮)한 자의 보호 및 지원

라. 노인·아동·심신장애인·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

제22조(조례)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. 다만,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.

❑ 긴급복지지원법

제7조의2(위기상황의 발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조사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정기 발굴조사 또는 수시 발굴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에게 자료의 제출,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의 거주지 등 현장조사 시 소속 직원의 동행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관계 기관·법인·단체 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.

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한 발굴체계의 운영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.